

당진 대덕수청 중흥S-클래스 포레힐 임차인 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



■ 공급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동 1877번지

■ 공급대상 : 전용 8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06호

■ 시 행 사 : (주)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공사 : 중흥건설(주)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주)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입주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며, 동법 시행규칙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복 계약시 기존 주거주택의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2 및 시행규칙 14조의11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4.03.13.(수)이며, 이는 청약 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 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3.13.)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 거주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분리형(세어형, 이하 청년분리형으로 표기) : 상기 ①항의 청년 조건을 충족이면서, 1실 1인 거주대상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임차인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 임차인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모집공고일(2024.03.13.)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 3)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

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및 소득요건, 청년 특별공급의 연령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안내문 등은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dd-sclas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X	X	X	X

- 이 주택의 일반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으며 (청년분리형 제외), 노령자, 노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일에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청년분리형)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 공정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추천 및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은 총 세대수에서 특별공급(163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후 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규정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무주택세대 요건)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을 적용합니다.
- 이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임차인이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에서 시공된 상태로 임대, 입주, 관리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이 공고문은 당사 “당진 대덕수청 중흥S-클래스 포레힐” 홈페이지(dd-sclas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 중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벌이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위약금징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 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 만 청약신청이 가능(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당첨 시 당첨건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 7에 따라 주택 소유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06.01)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청 주택개발과-10341(2024.03.07.)로 임차인 모집공고 신고수리

■ 공급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동 1877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3~20층 7개동 총 406세대(488실) 중 일반공급 243세대
 [특별공급 163세대(245실) (신혼부부 81세대, 청년분리형 82세대(164실))]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 관리번호	타입	공급 유형	세대별 계약면적(m ²)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신혼부부	청년 분리형(실)			
공공 주택 임대	2024850003	84A	일반형	84.9352	27.8176	112.7528	60.1820	172.9348	-	-	230	230	24년 04월
		84A-1	신혼부부	84.9352	27.8176	112.7528	60.1820	172.9348	47	-	-	47	
		84A-2	청년분리형	60.2495	19.7327	79.9822	42.6906	122.6728	-	82(164)	-	82(164)	
		84A-3	청년분리형	24.6857	8.0849	32.7706	17.4914	50.2620	-		-		
		84B	일반형	84.9637	27.8003	112.7640	60.2022	172.9662	-	-	13	13	
		84B-1	신혼부부	84.9637	27.8003	112.7640	60.2022	172.9662	34	-	-	34	
		합계									81	82(164)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건축설계도서에 표기된 타입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 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별도 부과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이 시설들에 대한 운영권 및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일체 관여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타입(84A/84A-1,2,3, 84B/84B-1)은 공급유형(일반/특별)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면적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년분리형 면적안내

공급유형	청년분리형(세대1)	청년분리형(세대2)
타입표기방식	84A-2	84A-3
전용면적	60.2495㎡	24.6857㎡

- 청년분리형의 경우 1세대에 출입문 2개소를 설치하여 침실, 주방, 욕실 등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청년분리형 세대 1,2는 모두 침실 1과 거실1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면적이나 구성을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84A-2(청년분리형)와 84A-3(청년분리형)는 각 세대당 2인이 입주하며, 개별 공간(84A-2[전실, 현관, 거실, 주방, 팬트리, 침실, 욕실, 드레스룸, 발코니 등 포함], 84A-3[현관, 거실겸주방, 욕실, 침실 등 포함]을 제외한 세대 현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84A-2(청년분리형)와 84A-3(청년분리형)는 청약홈 청약신청이 아닌, 홍보관 방문 접수 형태로 진행됩니다.
- 84A-2(청년분리형)와 84A-3(청년분리형)에 2인 동반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청약신청 시 동반입주를 하실 분과 함께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청약을 신청하거나, 청약신청에 필요한 대리인 서류를 모두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대표신청자를 선임하여 청약하셔야 하며, 신청 자격 중 형제, 자매, 지인 가능하나 지인의 경우 동성만 가능합니다. 신청완료 후 한명이라도 청약 취소 시 전원 신청 취소되며,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 전원이 선정 취소됩니다. 또한 결격사유로 인해 신청자 전원이 취소된 경우, 구성원 변경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기간 내 신청취소 후 재청약 가능)
- 84A-2(청년분리형)와 84A-3(청년분리형)의 홍보관 방문 접수 시에도 타입만 선택 가능하고,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으며, 분리세대의 실 배정은 서류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성별과 동반입주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무작위 추첨의 형태로 세대 및 호실이 배정됩니다.
- 84A-2(청년분리형)와 84A-3(청년분리형)의 관리비는 거주하는 2인이 매월 1/N(전용면적 기준)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까지로 합니다. (또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일도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까지로 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단위 : 원)

공급유형	타입	동 구분	공급세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입주지정기간)	
일반공급	84A	501동 1,2,3,5호, 503동 1,2,3호 504동 1,2호, 506동 1,2,3,5호, 507동 3호	230세대	175,000,000	17,500,000	157,500,000	121,000
	84B	507동 5호	13세대	175,000,000	17,500,000	157,500,000	121,00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공급유형	타입	동 구분	공급세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입주지정기간)	
신혼부부	84A-1	502동 3호, 505동 1호, 507동 1호	47세대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123,000
	84B-1	502동 5호, 505동 5호	34세대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123,000

■ 청년(분리형)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공급유형	타입	동 구분	공급 세대수/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입주지정기간)	
청년분리형 (세대1)	84A-2	502동 1, 2호, 505동 2, 3호 507동 2호	82세대	82실	106,206,000	10,620,600	95,585,400	87,000
청년분리형 (세대2)	84A-3			82실	43,794,000	4,379,400	39,414,600	36,00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 업무를 기준(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으로 하며, 잔금 및 일체의 납부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률(인상분)은 계약 갱신 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기간으로부터 2년까지(임대차 계약 갱신은 2년 단위) 유효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타입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당첨 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했을 경우에도 열쇠 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당사 주택임대차계약 위약금은 200만원(단, 분리형은 100만원)입니다. 또한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을 납부할 시 은행기관 등에 대출로 인하여 잔금의 일부가 공제되어 임대보증금 계좌에 입금되었을 경우, 임차인 본인이 직접 미납된 임대보증금까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 완납이 확인된 후에 열쇠 불출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임차인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 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500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임대조건은 타입별, 층별 차등이 있으므로 타입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각 타입별 임대조건을 표준형 및 선택형 I, 선택형 II (총 3개의 임대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선택한 임대조건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 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위 : 원)

타입	공급실수	공급유형	표준형		선택형 I		선택형 II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84A	230	일반공급	175,000,000	121,000	103,633,000	388,000	62,180,000	544,000
84A-1	47	신혼부부	150,000,000	123,000	91,400,000	342,000	54,840,000	479,000
84A-2	82	청년분리형	106,206,000	87,000	64,703,000	242,000	38,821,000	339,000
84A-3	82	청년분리형	43,794,000	36,000	26,697,000	100,000	16,018,000	140,000
84B	13	일반공급	175,000,000	121,000	103,633,000	388,000	62,180,000	544,000
84B-1	34	신혼부부	150,000,000	123,000	91,400,000	342,000	54,840,000	479,000

3. 공급일정

■ 청약 및 계약일정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	계약일자
특별공급 (청년)	2024.03.18.(월) ~ 03.19.(화) 10:00 ~ 16:00	홍보관 방문접수 (충남 당진시 수청4길 60, 지성빌딩 1층)	2024.03.25.(월) 16:00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dd-sclass.com)	2024.03.26.(화) ~ 03.30.(토) 10:00 ~ 17:00	2024.03.31.(일) ~ 04.02.(화) 10:00 ~ 16:00
특별공급 (신혼부부)	2024.03.18.(월) ~ 03.19.(화) 09:00 ~ 17:30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접수 (www.applyhome.co.kr)	2024.03.25.(월) 16:00 청약홈(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 정보취약계층은 홍보관에서 인터넷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dd-sclass.com)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4.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공통)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4.03.13.(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계층(청년분리형)),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자산보유액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모집안내

모집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혼부부	81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3.13.)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청년	82세대 (164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3.13.)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 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청년분리형)의 경우 임차인 선정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방식으로 당첨자(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예비임차인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세대수의 4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5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년분리형 유의사항 : 1세대에 출입문 2개소를 설치하여 침실, 주방, 욕실 등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써 1인 1침실로 공급합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배정되며 동성으로 배정될 수 있음. 84A-2, 84A-3 타입으로 표기되며 침실크기를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소득기준

비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3년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10% 이하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120% 이하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모집안내

모집분야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3.13.(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의2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본 주택은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함.(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함.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3.13.)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 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 청약신청금(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일반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청년특별공급 제외)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청년특별공급(청년분리형)의 경우 홍보관 방문 접수 (청약 신청금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 (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환불 관련 업무는 전산 및 은행에서 일괄 처리되며 사업주체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분	환불방법
청약자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하며, 환불 신청계좌가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이용대상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 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청약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공공지원민간임대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인증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타입 선택 → 청약자격 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접속 후 PC청약방법 참조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시, 모든 당첨을 취소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건의 주택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각각 청약 신청 불가)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일반공급, 특별공급(청년 특별공급 제외)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홍보관 방문 청약 안내사항**

- 청약 신청자 중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의 경우, 홍보관 방문 시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이고, 아래 일정 및 장소, 구비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신청장소
정보취약계층 (노약자, 장애인 등)	2024.03.18.(월) ~ 03.19.(화) 10:00 ~ 17:00	충남 당진시 수청4길 60, 지성빌딩 1층 당진 대덕수청 중흥S-클래스 포레힐 홍보관

■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 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시 청약신청금 필요(주택청약 참가은행에 통장개설 및 청약신청금 예치),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홍보관 방문 ※ 홍보관에서는 현금수납 불가하므로 필히 주택청약 참가은행 입출금 통장에 청약신청금(10만 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며, 인증서를 필히 발급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대리신청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확인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 제출 생략 가능 	<p>민등록증을 말함)</p>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3.1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시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청약신청금 예치 및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홍보관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청약홈 신청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8.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 이 주택의 일반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 및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청년분리형)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추첨 및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임차인 선정 시 타입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타입별 공급세대의 4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dd-sclass.com)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 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임차인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 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5. 서류 제출안내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	서류 제출방법	서류 제출주소
2024.03.26.(화) ~ 03.30.(토) [5일간]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는 서류 제출기한 내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제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 시에는 서류원본을 제출해주시고, 이메일 접수 시에는 서류 스캔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나, 이메일 접수 시 계약체결 전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당사 홍보관 :</p> <p>충남 당진시 수청4길 60, 지성빌딩 1층 당진 대덕수청 중흥S-클래스 포레힐 홍보관</p>

- 당첨자는 본인의 임차인 자격요건 및 하단의 특별공급 제출서류 및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목록을 확인하시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가구 구성 및 소득 유형 등에 따른 자세한 서류안내문은 당첨자 발표 후 홈페이지(dd-sclass.com)에 안내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특성상 송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지연, 당첨자의 실수로 인한 서류 미비 혹은 잘못된 서류제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일반공급·특별공급)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2. 인감도장	본인	
	○		3. 신분증 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4.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본인	· 당사 홈페이지 양식 업로드 예정, 작성 및 인감날인 후 제출
	○		7. 무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홈페이지 양식 업로드 예정, 작성 및 인감날인 후 제출
		○	8.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공급 유형별	공통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홈페이지 양식 업로드 예정, 작성 및 인감날인 후 제출	
		○	3.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홍보관 비치)	
	청년	○	1.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	3.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	4. 사실증명원	본인	· 소득이 없는 세대원	
	신혼 부부	혼인 상태인경우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경우	○	1. 결혼 확인 서류	본인	· 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예비배우자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로 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당사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사업주체에서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2024.03.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청년) 소득증빙서류 발급안내**

구 분		내 용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세무서 · 해당 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 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홍보관 비치)	· 접수 장소

※ 사업주체에서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무소득자인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및 납세사실확인증명서 제출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2024.03.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6. 계약체결

■ 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일정	계약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4.03.31.(일) ~ 04.02.(화) [3일간] 10:00 ~ 16:00	당사 홍보관 : 충남 당진시 수청4길 60, 지성빌딩 1층 당진 대덕수청 중흥S-클래스 포레힐 홍보관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본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본인 발급, 아파트 임대차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분리 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본인 명의 휴대폰 (전자계약 작성시 필요) · 계약금 입금확인증
대리인 계약 시 (배우자 대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계약 시 당첨자 본인 명의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필수, 홍보관 비치) · 당첨자 명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 1통, 당첨자 본인 인감도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2024.03.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고
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704-616152	(주)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1001홍길동)
- 임대보증금 입금 시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단지 101호) 입금내역에 호수가 없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 납부 확인 및 계약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인 당첨 호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 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우리은행 1005-104-592190 / 예금주 : (주)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임차인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2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임차인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임차인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4년 4월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 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학교관련 유의 사항

- 학교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대덕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고,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관내 기존학교 및 개교예정인 학교에 배치가능하며,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는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계획은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 입주 시기 및 학생 배치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당진교육지원청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안내(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이하의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이하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급되는 보증서 및 보증약관 내용에 따릅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 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주민카페, 다목적실, 휘트니스, GX룸, 멀티미디어실, 생활체육실, 실내골프연습장, 방과후교실, 독서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주)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인 [(주)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위탁하였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dd-sclass.com)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 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임차인이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당사 주택임대차계약 위약금은 200만원(단, 분리형은 100만원)입니다. 또한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일반관리비와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500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의무기간 10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일반관리비와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지정기간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인 이용 가능시설(상가 등) 설치가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대수를 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

니다. 따라서 외부인의 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주차장 운영관리 업체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주차료의 책정 및 부과기준은 임대료 및 관리비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부과·징수되며,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부과·징수되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정식 임차인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모임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윤리적 문제행위가 적발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 및 향후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임대차계약 갱신의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은 실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지정일과 임차인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 신청자, 계약자,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잔금 및 당월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구분	내용
단지 단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가 위치한 당진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조정될 수 있음. • 당진대덕수청지구의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북측으로 16m도로, 동측으로 12m도로, 남측으로 6m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단지 북동측으로 삼거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단지 북서측으로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소음, 먼지등이 발생 할수 있음. • 본 사업지 주변 완충녹지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준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지 주변 도로에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라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휨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 사업지 차량출입구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대지경계선 내의 보도는 거주자의 편익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은 입주민의 부담이니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지구 내외 도로·상하수도·가스·학교·공공시설·가로공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지자체·교육청 등 관련 기관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홍보관, 사이버 견본주택 내 모형 조형물에 표시된 당해 사업지 외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부지 개발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환경의 변화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개발현황을 면밀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진 대덕수청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 과정 중 지구계획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등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당진 대덕수청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북측에 폭 16m 도로, 북동측부터 단지 동측으로 12m도로, 남측으로 연결되는 6m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남서측 6m 도로 건너 민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저층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북동측에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부지 서측으로 보행자 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하여 먼지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북동측부터 남측까지 약 320m 옹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북동측 약 300m 지점에 농협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소음 및 냄새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북서측 약 150m 지점에 봉암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북측 약 250m 지점에 하천과 여울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단지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부의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도시의 트렌드 변화, 색채의 유형변화 등에 의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야간 경관조명에 의해 고층세대는 눈부심 및 수면장애 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 등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의 소음 및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 안방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냉매배관이 설치됨.
- 전기 및 통신맨홀 등의 인입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가스계량기 및 세대 가스배관은 실내에 설치 될 예정이며 원격검침 설치 시, 검침 데이터를 도시가스사에 제공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 마감은 층별, 위치별 시공부위에 따라 석재 또는 뿔칠, 수성페인트로 시공되오니 모형 또는 CG등을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와 주변도로와의 레벨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 주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입점할 점포 종류에 따라 소음 및 먼지 악취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및 근린생활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 탐라이트, 썬큰, 어린이놀이터)등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DA가 설치되는 인근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방법상 취약 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부대시설(공용홀 포함)의 마감 및 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모형 및 공급단지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서비스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의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주변 인접대지와 레벨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색상 및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 출입로 및 1층 아파트 현관은 주변 대지 여건 및 디자인 특화에 따라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최상층의 옥상 등은 개별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1층의 녹지공간과 같이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고, 공공의 목적에 반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은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지상1층 제연팬룸의 환기를 위한 설비 및 환기구가 각동 필로티(501,502,505,506,507동 2개소 503,504동 1개소)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팬룸의 환기를 위한 설비 및 환기구가 501동 지하1층 배면부1개소, 503동 좌측부 1개소, 504동 전면부1개소, 우측부1개소 506동 배면부2개소 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전실 환기를 위한 설비 및 환기구가 507동 전면부1개소, 경로당 보육시설 남측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같은 통신 설비는 501동 옥상 및 옥탑에 설치 될 예정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함.
(통신설비의 설치 위치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변경 및 설치개소가 변경 될 수 있음)
- 각동에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인한 전파교란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비, 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설치 위치 등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부 및 옥탑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다양한 평면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행자도로와 연계된 대지내 전면보도는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일체 할 수 없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p>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502동, 501동, 단지 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504동, 505동은 단지 출입 및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 정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입주인 임의로 통제 및 점유, 소유권 주장 등을 할 수 없음. • 생활체육실, 실내골프연습장, 관리사무실의 경우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기 및 채광에 불리 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실, 실내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가 주민공동시설 지붕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설치 위치 인근 세대는 시설 이용객에 의한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보행자 출입구의 형태 및 구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조경 시설물변경에 따른 선형이나 포장 및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주출입구 차선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1층이 필로티로 구성된 동은 입구 상부에 보행자 안전시설인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2층 세대는 빗물에 의한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장 7개소가 설치될 예정임.(설치장소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소는 완속 5개소(콘센트형 24개소 포함), 급속 1개소 설치될 예정임.)
	<p>동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2동 인근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 이용에 따라 일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2층 507동 인근에 저수조, 기계실, 우수조, 우수펌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이 위치하고, 지하2층 505동 인근에 재활용창고가 위치하여 인근 저층부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지상층 (34.5레벨)505동 전면부, 507동 좌측부에 경로당, 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에 따라 일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건물 인접으로 인하여 저층부세대는 방범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507동 후면부에 어린이놀이터1, 502동전면부에 어린이놀이터2 506동 정면으로 유아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하여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501동 우측면에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 505동과 507동 사이 지상1층에 주문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배치도 등을 통해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501동 전면 좌측, 502동 후면 우측, 503동 후면 정면, 504동 전면 505동 우측, 506동 후면, 507동 후면에 쓰레기 보관소가 위치하여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1동 전면과 506동 후면 사이 3개소, 502동 전면 1개소 503동 전면 1개소 504동 전면 1개소 507동 후면 1개소에 탐라이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한 주차장 출입구는 지하2층으로 연결되며, 단지 부출입구에 위치한 주차장 출입구는 지하1층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총 지하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레벨차이에 의해 지하1층은 501동, 505동, 506동, 507동 진입이, 지하2층은 전동으로 진입 가능한 구조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높이는 약 2.7m으로 택배차 진입은 가능하나 택배차 이동은 지하2층만 가능하며, 지하주차장 내 일부 구간에서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이유로 통행이 제한 될 수 있음. • 주차장은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팬룸(제연팬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 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 되어 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음.
	근린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 될 예정으로 인근 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함. • 본공사시 근린생활시설의 위치 및 크기 형태 호실 개수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여건에 따라 입면이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주출입구에 인접한 지하2층 공동주택 주차장 내에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자 임의로 소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의하여 단지 내부 및 주변에 교통장애가 발생 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쓰레기 보관소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설치될 수 있고 인접한 세대는 악취가 발생 할 수 있음.
단위 세대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Mock up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함.
- 본 아파트는 발코니 비확장을 기본으로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형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며 발코니 확장면적은 타입별로 상이함.
- 본 아파트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달로그와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됨.
- 본 아파트의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바닥 구배시공을 하며, 준공 도면 및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2(안방욕실)은 샤워실 부분만 습식으로 시공되며, 세면대 및 변기 설치 공간은 건식으로 시공될 예정임.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는 미설치됨.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 및 붙박이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침실1-2 사이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벽체임.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 본 공사 시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위치하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되거나 천장을 설치할 경우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되지 않음)
- 세대별 주방발코니에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임.(일부세대의 경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급수, 급탕 분배기 위치 및 제조사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청년분리형 세대의 경우 별도로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되지 않고 메인 세대에만 설치됨)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적용되지 않거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조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나눔 부위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타일은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며, 주방 확장시 바뀌는 부분은 견본주택 및 관련 도서를 방문하셔서 확인 바람.
- 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는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주방상부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하드웨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3~10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발코니2(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 및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실에 면한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됨.
-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를 반드시 개방하여야 함.(미개방시 화재사고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현관, 주방 등 인조강화석 및 인조대리석의 나누기는 시공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과 줄눈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가구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다를 수 없을 수 있으며, 본 공사

		<p>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분전함과 세대통합단자함의 안방 벽면에 설치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세대/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제공/전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 됨.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표현된 이미지,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색상 및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재의 나누기도 및 줄눈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커뮤니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수량,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지상층(레벨+34.5), 문고 및 독서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상1층, 관리사무실, 주민카페, 다목적실은 지하1층에 생활체육실, 실내골프연습실, 휘트니스, 샤워실은 지하1층에 설치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실별 배치 및 면적,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홍보자료나 모형상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벽체,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각종 설비 및 시설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하 2층에 재활용창고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민공동시설 지하2층~지하지상1층에는 코인세탁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시설계획, 공간구성, 실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층수와 호수는 전산추첨으로 지정되므로 소음으로 인한 동호 교환은 불가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시간은 향후 주거서비스 운영 관리업체와 운영방식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임차인이 입주를 완료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결성된 후 임차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및 주거서비스 운영 관리업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개시시점과 운영시간 역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주거서비스 이용료, 세대부과금 등 금액 역시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에도 운영 개시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주거서비스 이용은 추후 선정되는 공동주택 운영 관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원활한 주거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세대부과금 등 임대료 및 관리비 외 별도 비용이 부과되는 점을 유념하시시기 바라며, 추후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임차인 부담임.
- 부대복리시설 등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 가스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은 임차인 부담임.
- 유·무상 주거서비스의 제공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주체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의해 운영(공간 배치, 예산, 프로그램 등)될 예정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 내 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의 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소음 등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거서비스의 제공 및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한 임대인과 서비스 업체 간의 양해각서, 협약서 등의 체결, 변경, 해제에 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11조)	1. 창의 단열	적용	별표 16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0W/m ² K 이하, 남부지역 1.2W/m ² K 이하, 제주지역은 1.6W/m ² 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9W/m ² K 이하, 남부지역 2.1W/m ² K 이하, 제주지역은 2.5W/m ² K 이하가 되도록 설계
	2. 벽체 등 단열	적용	외벽과 측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1의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
	4.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과 거실내의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W/m ² 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m ² 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2등급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5. 창면적비	적용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2를 만족하도록 설계
	6. 발코니외측창 단열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8W/m ² K 이하
	7.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
	단열재의 설치	적용	세대 내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9조(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①항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제9조(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②항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제9조(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③항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제16조(실별 온도조절장치의 설치)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제17조(절수설비의 설치)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13조(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등의 설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제14조(일괄소등스위치의 설치)	적용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조명) 1항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
	제15조(조명) 2항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등급	AA등급		비 고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 목	1	배선	침입감지기	
	2	예비배관	차량통제기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전자경비시스템	
	4	통신배관실(TPS)	주방TV	
	5	단지서버실	일괄소등제어	
	6	폐쇄회로TV장비	디지털도어록	
	7	가스밸브 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8	조명 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9	난방 제어기	욕실폰	
	10	현관방범 감지기		
	11	주동현관 통제기		
	12	원격검침 전송장치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시공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감리회사
(주)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7704988]	중흥건설(주) [법인등록번호 : 200111-0016662]	한국자산신탁(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2196304]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098130]	(주)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법인등록번호 : 134811-0034083]

■ 사이버 모델하우스 : dd-sclass.com

■ 홍보관 위치 : 충남 당진시 수청4길 60, 지성빌딩 1층, 당진 대덕수청 중흥S-클래스 포레힐 홍보관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1533-6780